



중국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방법>에 관한 내용에 이어,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방법>의 첨부 문서로 함께 공표된 중국의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하는 기업들의 경우 이를 통해 표준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숙지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표준계약 전문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제정한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은 관련 용어의 정의, 중국 내 개인정보를 해외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중국 경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해외접수자의 의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관련 용어의 정의

표준계약 제1조는 개인정보처리자, 해외접수자, 개인정보주체, 개인정보, 민감개인정보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처리목적, 처리방식을 결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개인을 가리킵니다.
- (2) "해외수령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외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단체, 개인을 가리킵니다.
- (3) "개인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정보에 의해 식별되거나 연관되는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 (4) "개인정보"라 함은 이미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각종 정보를 가리키며, 익명 처리 후의 정보를 포함하지는 아니합니다.
- (5) "민감개인정보"라 함은 누설되거나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자연인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신체, 재산상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개인정보를 가리키며, 생물학적 식별, 종교신앙, 특정신분, 의료건강, 금융계좌, 위치 등의 정보 및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개인정보를 포함합니다.
- (6) "관련 법률법규"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계약방법> 등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를 가리킵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표준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해외제공 개인정보의 최소범위 원칙 준수.
- (2)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 (3) 개인정보 해외제공에 관한 동의취득의무.
- (4) 규제기관의 규제조치에 대한 이행 및 협조의무.
- (5)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의무.
- (6)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계약 부분 제공의무.

3. 해외수령자의 의무

표준계약상 해외수령자가 이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처리의 엄격한 약정 준수 의무.
- (2) 개인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주체 동의취득의무.
- (3)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계약 부분 제공의무.
- (4) 개인정보처리의 개인권익 최소 영향 처리방식 원칙.
- (5) 개인정보 보존기간의 처리목적 실현 필요 최단기간 원칙.
- (6) 보존기간 만료 또는 계약 무효, 취소, 종료 시의 개인정보 삭제의무.
- (7) 개인정보처리 안정보장의무.
- (8)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의무.
- (9)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동화결정 관련 투명, 공평, 공정 보장 및 차별적대우 금지 등의 의무.
- (10)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처리자 준법감사 허용, 협조 의무.
- (11) 개인정보처리활동 기록의무.
- (12) 규제기관의 규제조치에 대한 이행 및 협조의무.

4. 해외수령자 소재국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계약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표준계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해외수령자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외수령자의 소재국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가 약정의무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수령자의,

소재국 또는 지역의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법규에 변화가 발생(해외수령자 소재국 또는 지역이 법률을 수정하거나 강제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외수령자가 표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외수령자는 해당 변화를 알게 된 후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해외수령자가 소재국 또는 지역의 정부부서, 사법기관의 표준계약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관한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해당 통지의무는 2022년 의견수렴안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대한 이행을 위해 마련한 규정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외국 사법기관 또는 법집행 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접수자가 그러한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제41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구제

표준계약은 개인정보주체를 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와 해외수령자는 개인정보주체가 그러한 권리를 행사, 실현하는 것에 관해 여러가지 보장, 협조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인정보주체가 계약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알 권리, 결정권, 제한/거부권.
- (2) 본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복제, 정정, 보완, 삭제 요구권.
- (3) 본인 개인정보처리규칙에 대한 해석, 설명 요구권.

표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주체는 규제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분쟁절차회부 등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개인정보주체가 계약 분쟁에 관해 제3자 수익자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규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해외수령자는 그 선택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주체가 진행한 권리보호의 선택은 개인정보주체가 기타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인정보주체가 권리구제와 관련된 준거법의 선택 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계약해제, 계약위반책임, 기타

위와 같은 주요 내용 이외에 표준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계약해제사유, 각 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 및 준거법, 통지, 분쟁해결 등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약 20여년간 중국 및 국내 로펌에서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홍송봉 중국변호사를 필두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분야의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협업하여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 현지의 법률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홍승봉

선임외국변호사

T. (+82) 2 6003 7056

E. sfhong@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김지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07

E. jwkim@yoonyang.com